

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(안)

의안 번호	49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8 . 7 . 15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제안이유

중.서부경남의 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한 인근 시.군간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가. 협의회 위원은 진주,통영,사천시장,고성,산청,함양,합천군수 및 수자원공사 남강댐건설사업단장으로 함.(안 제3조)

나.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,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지원,수질오염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 함.(안 제6조)

다.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단체에서 동일한 비율로 부담 함.
(안 제10조)

3. 큰 거

o 지방자치법 제 142조 제2항

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.

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(안)

제 1 조(목적) 이 규약은 광역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공동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명칭) 이 공동협의회는 '진양호 수질관리 공동협의회'(이하 '협의회'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3 조(구성) 협의회 위원은 진주시장, 통영시장, 사천시장, 고성군수, 산청군수, 함양군수, 함천군수 및 수자원공사 남강댐건설사업단장으로 한다.

제 4 조(회장) ①협의회 회장은 구성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(회의 및 회의참석)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·하반기에 각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.

②임시회의 개최요구시 협의회 안건을 회의개최 10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협의회의 회의에 기관의 대표자인 협의회 위원이 참석치 못할시는 그 소속 부단체장이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

제 6 조(협의사항) 협의회는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

1.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2. 진양호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
3. 진양호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진양호 수질관리에 관하여 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7 조(간사) 간사는 회장의 소속단체 직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제 8 조(회의록) 회의록은 간사가 기록하여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실무협의회) ①협의회 구성과는 별도로 구성위원 소속자치단체 및 기관의 수질 관리업무를 취급하는 업무담당 과장 및 수도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며, 협의회 협의사항의 추진 및 기타 실무적인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.

③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, 협의회의 간사가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.

제 10조(경비부담) 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 구성 위원단체에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다.

②협의회의 협의로 추진하는 공동사무의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.

제 11조(회계) ①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간사가 경리한다.

②협의회의 경리사항은 매 회의 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 12조(규약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정기회에서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제 13조(운영규정)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.